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05293호

시행일자 2014. 10. 2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『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』 관련 질의응답 안내<내용변경>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: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460호( '14.9.25)

- 대의협 제813-05044호( '14.9.25)

나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461호( '14.9.25)

- 대의협 제813-487호( '14.9.25)<정정재송부>

다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580호( '14.10.2)<내용변경>

3. 보건복지부에서 『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』 과 관련하여 「희귀난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」 에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이 있어 재송부 해온바,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구분	수정 내용
Q19	질문 내용 중 ‘결핵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’ 를 ‘2015.1.1.부터 결핵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할 경우’ 로 변경
Q29	(예시2)를 삭제하고, (예시1)을 (예시)로 변경

붙 임 : 희귀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(141002). 일체. 끝.

(※붙임자료 메일송부/ 시도 의사회는 그룹웨어-전자게시판-시도업무교류방 참조)

# 대한의사협회

“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”



수신처 : 시도지사회장(16개)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(20개), 학회장(26개)